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차)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4. 22.

용인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규모 : 55가구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17.(금)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7.1.1.~2023.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2.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17.(금)
 -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3.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2017.1.1.~2023.12.31.) 이내인 자

※ 「신혼부부 주택의 특별공급 운용 지침」 준용, 2024년 혼인신고한 자는 2025년에 신청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 불인정)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 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기준중위소득 1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내용으로 확인

4.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024년 6월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 상 지원기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6. 문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324-3345)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384)